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3. 7. .
발 의 자 : 김백규 의원외2

1. 개정이유

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성주군위생환경사업소의 폐지와 성주군문화예술회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○ 동 조례 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
제1항 제2호중 농업기술센터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
문화예술회관을 삽입함

3. 내 용 : 별첨

4. 신.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참고자료

○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
○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
제1항 제2호중 "위생환경사업소"를 "문화예술회관"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. (생략) 2. 보건소, 농업기술센터, **위생환경사업소** 성주읍, 선남면, 용암면, 수륜면, 가천면, 금수면, 대가면, 벽진면, 초전면, 월항면 3.~5.(생략) ② (생략)	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---------- --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 **문화예술회관**, ----- ---------- ---------- 3.~5.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